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4
----------	-----

제출년월일 : 2021.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에 대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 및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안 제8조의2)

- 사망한 평창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평창군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월5만원 지원

나. 별지서식 수정 추가(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 기존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제3호 서식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8. 17 ~ 9. 6)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기획실-11144, 2021.8.13.)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11144, 2021.8.13.)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복지과-31468, 2021.8.12.)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① 군수는 제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둔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

1.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다르게 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배우자수당 지급의 요건확인, 환수, 신상변동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8조의2(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u></p> <p>① <u>군수는 제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둔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다르게 하는 경우</u> 2. <u>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u> <p>② <u>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배우자수당 지급의 요건확인, 환수, 인상변동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u></p>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보훈(참전)등록번호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당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변경내용			
<p>『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평 창 군 수 귀 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p>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p> <p>(<input type="checkbox"/>주민등록 <input type="checkbox"/>여권 <input type="checkbox"/>외국인등록 <input type="checkbox"/>운전면허)번호 :</p> </div> <p>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p>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당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변경내용			
<p>『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p>				
평 창 군 수 귀 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 <input type="checkbox"/> 여권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 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 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발취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예우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나. 비용 발생 요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읍면별 참전 유공 사망자의 배우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참전유공 사망자	사망자의 배우자				
		생존자			사망자	**기타
		계	*관내거주	관외거주		
총 계	550	254	190	64	256	40
평창읍	124	46	35	11	71	7
미탄면	24	13	11	2	3	8
방림면	18	12	3	9	6	0
방림계촌	30	15	14	1	13	2
대화면	77	35	28	7	34	8
봉평면	58	25	20	5	30	3
용평면	53	32	24	8	17	4
진부면	123	60	45	15	52	11
대관령면	46	16	10	6	30	0

※ 참전유공사망자 명단 출처: 강원동부보훈지청, 생존자 및 거주 여부 확인(읍면 민원부서)

* (관내거주) 수당지급 대상자 확인

** (기타사유) 이혼, 미혼, 국적상실, 혼인불명, 확인불가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산출근거 : 금120,000천원(금일억이천만원)

- 산출 근거 : *200명 × 50천원 × 12월 * 관내거주자 및 전입자 포함

○ 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소요액	120	120	126	126	129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120	120	126	126	129

다.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연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연락처	(033) 330 - 21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20,000	120,000	126,000	126,000	129,000	621,000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120,000	120,000	126,000	126,000	129,000	621,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0,000	120,000	126,000	126,000	129,000	621,000
	지방세	120,000	120,000	126,000	126,000	129,000	621,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